

수출채권할인 기본 계약

- 고객 -

HSBC 은행 서울 지점

- 은행

20 년 월 일

외환 017-03 (2024-07-31)

본 수출채권할인 기본 계약 (이하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준거하여 설립되고
_____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 (이하 “고객”)와 대한민국법에 준거 은행 영업점 인가를 받고 주소가
서울시 중구 칠판로 37번지 HSBC 빌딩인 홍콩상하이은행 서울 지점 (이하
“은행”)간에 20__년 __월 __일 체결 되었다.

서문

- A. 고객은 고객과 수입자 (채무자) 간의 계약 (“생산판매약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판매했거나 판매할 물품 (“상품”)의 거래대금을 받을
권리(“수출채권”)를 가진다.
- B. 고객은 은행에 상환 청구권이 있는 방식의 수출채권 양도를 희망하며,
은행은 미결제 금액(아래에 정의된)이 은행과 고객간에 별도로 합의된 한도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본 계약의 조건에 부합하는 한 당해 수출채권의
매입을 원한다.

이에 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상호 합의한다.

1조 정의

상기 정의된 용어와 더불어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정의를
따르며, 단 복수 모두에 적용된다.

- 1.01 “은행 영업일” 이란 서울 그리고 채무자의 소재지 은행이 영업을 실시하는
날 그리고 당해 수출채권의 통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날을 의미한다.
- 1.02 “할인 금액”은 각 수출채권에 대하여 할인수수료를 제한 채권의 원금을
의미한다.
- 1.03 “할인수수료”는 수출채권 금액에 할인률 그리고 수출채권 매입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하여 이를 ‘360’ 또는
‘365’ (통화별 적용)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 1.04 “조정수수료”는,
(a) 결제일이 만기일 이후인 경우에는 수출채권 금액 x [할인률 + 연1.5%]
x [해당 채권 만기일부터 결제일 전일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0’
또는 ‘365’ (통화별 적용)]
- (b) 결제일이 만기일 이전인 경우에는, 수출채권 금액 x 할인률 x [해당
채권 결제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 ‘360’
또는 ‘365’ (통화별 적용)]
- 1.05 “할인률”은 기준금리에 마진을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 1.06 “기준금리란

외환 017-03 (2024-07-31)

(a) 승인된 통화가 대한민국 원화(KRW)인 경우 CD수익률을 의미하고, CD 수익률 이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일(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면 만기 91일로 본다)인 CD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제출기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한다. CD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대체금리로는 3개월 CD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등급)의 채권평가 5사 평균금리를 사용하기로 한다. 해당 금리는 협회가 고시하는 CD수익률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 공시하는 금리임을 선정 근거로 한다. 은행은 홈페이지에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수익률 및 선정근거 등을 안내하는 조치를 취한다. 은행은 CD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CD수익률 산출중단 사실에 대해 안내한다. (전화, 메일, 홈페이지 공시 등)

(b) 승인된 통화가 미합중국 달러화(USD)인 경우 관련 이자기간의 첫번째일로부터 1영업일전의 Term SOFR screen rate를 말한다. Term SOFR screen rate란 CME Group Benchmark Administration Limited가 고시하는 기간물에 대한 금리이며, 관련 이자 기간에 대응하는 기간물이 고시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이자기간을 초과하는 기간물 금리 중 가장 근접하여 고시된 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Term SOFR screen rate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해당 이자기간의 첫번째일 이전 중앙은행금리와 해당 중앙은행금리 조정을 합산한 연율을 대체금리로 한다.

1.07 “마진” 은 연 퍼센트 (%) 또는 은행과 고객간에 합의한 이유을 의미한다.

1.08 “만기일” 은, 각 수출채권에 대하여, 고객이 진술 보증하는 채무자의 수출채권 대금지급 날짜를 말한다.

1.09 “결제일” 은 채무자가 채권양도 통지서(견본양식B)에 특정된 계좌로 수출채권 대금을 입금하는 날짜를 의미한다. 결제일이 만기일 이후인 경우에는 유예 기간의 최종일을 경과해서는 안된다.

1.10 “유예 기간” 은 결제일이 만기일 이후인 경우 수출채권의 만기일로부터 결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유예 기간은 만기일로 부터 최대 45일까지 허용된다.

1.11 “미결제금액” 은 채무자가 결제하지 않았거나 고객이 환매하지 않은, 채무자가 은행에 지급해야 할 모든 수출채권의 총액을 의미한다.

1.12 “매입일” 은 각 수출채권에 대한 매입 요청서에 명시된 날짜를 의미한다. 매입 요청서에 매입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i) (은행 영업일 13:00시까지 매입 요청서가 접수된 경우) 접수 당일 (ii)(매입 요청서가 은행 영업일 13:00시 이후에 접수된 경우) 익영업일이 매입일이 된다.

1.13 “한도금액” 은 미화 \$_____ 를 말한다.

2조 양도

2.01 고객은 본 계약에 따라 은행 영업일에 별첨된 견본 양식A를 바탕으로

외환 017-03 (2024-07-31)

수출채권매입의사를 서면으로 작성(“매수 요청서”), 해당 매입일의 수출채권 매입을 요청 할 수 있다. 매입요청서가 일단 은행에 접수되면 취소가 불가능 하며 고객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 본 계약의 목적에 따라 고객은 EDI를 이용하여 은행이 요구 하는 양식과 내용의 매입 요청서를 접수할 수 있으며, 이와같은 EDI 접수도 본 계약 상의 매입 요청서로 간주된다.

2.02 은행은 고객으로 부터 매입 요청서를 받은 즉시 해당 매입 요청서의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은행이 매입 요청서에 따라 수출채권을 매입하기로 한 경우 은행은 해당 매입일 오전 11시 30분까지 고객에게 본 사실을 통지한다. 매입일 11시 30분까지 은행의 통지가 없는 경우, 매입 요청이 수락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요청서에 따라 은행이 매입하기로 결정한 수출채권과 관련하여 고객은 매입일 당일 해당 수출채권을 은행에 반드시 양도해야 하며, 은행은 매입일 당일 해당 수출채권을 양수해야 한다.

2.03 은행은, 각 매입일 당일, 제 5조에 명시된 선결 조건을 만족시키고, 은행이 매입 요청서 상의 채무자를 수락하는 경우에 한해, 수출채권의 할인 금액을 고객에 지급하고, 이로써 상기 제 2조 2항에 따라 해당 매입일자로 수출채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다. 단, 은행에 의한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은 고객에게 할인금액과 미결제 금액의 합계가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할인 금액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2.04 결제일이 만기일 이전인 경우 은행이 결제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고객에게 조정 수수료를 지급해야하며, 결제일이 만기일 이후인 경우에는 고객이 은행에 결제일 한달 이내에 조정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다.

2.05 고객은 본 계약 제 5조에 따라 은행에 매입 요청서, 선결 조건 등의 서류 송부시 팩스를 이용 할 수 있다. 고객은 은행에 팩스를 송부한 즉시 송부한 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을 이용하여 은행에 전달해야 한다. 단, 은행은 스스로의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팩스로 송부된 서류를 근거로 고객에 할인 금액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고객은 팩스를 통한 동 수출채권의 양도와 관련 은행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팩스로 접수된 요청서를 따름으로써 발생한 손해(제3자가 고객의 명판/인감을 위조하여 지시서를 보낼 경우에 따르는 금전적 손해 및 법정분쟁에 드는 비용 등)에 대하여 은행에 보상할 책임이 있다.

(a) 본 계약의 목적에 따라 고객이 제공한 최근 서명부에 있는 서명과 팩스의 서명을 대조

(b)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 팩스 요청서의 진위성을 신뢰

(c) 고의나 과실이 아닌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행동

2.06 고객은 채무자에 상업 송장이나 선하증권과 같은 원본 서류 송부시

외환 017-03 (2024-07-31)

채무자에 수출채권이 은행에 양도되었음을 알리는 통지를 해주어야 한다.

3조 환매와 연체 이자

3.01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고객은 은행의 요청에 따라 해당 수출채권을 즉시 환매 해야 한다.

(1) 채무자가 유예기간의 최종일까지 수출채권 결제를 하지 않은 경우

(2) 20__년 __월 __일 고객이 집행 또는 인정한 수출거래 계약("수출계약") 및 은행거래 기본 계약 ("기본 계약"), 또는 은행과 고객간에 체결된 기타 계약이나 약정에 따른 고객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하거나 은행에 이와 같은 권리를 허용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계약 당사자에 의한 본 계약의 의무 이행이 불법으로 판명된 경우

(4) 고객이 본 계약의 조항을 이행(본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를 제외)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그리고 이러한 불이행 및 위반이 구제 불가능하거나 구제가 가능하더라도 구제불능의 상황이 은행의 통지 후 30일간 지속되는 경우

(5) 은행으로의 (또는 은행으로부터의) 자금이체가 법률, 규정 및 금융제재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

3.02 본 계약에 따라 고객이 은행에 지급해야 하는 수출채권의 환매가는 수출채권의 원금에서 (a) 수출채권과 관련하여 은행이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의 합계를 제외한 금액이 되며 (b) 고객은 수출채권의 환매가 만기일 이전에 일어나는 경우, 환매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할인수수료를 (c) 만기일 이후 수출채권을 환매하는 경우, 해당 수출채권의 만기일로부터 환매일 전일에 해당하는 조정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한다

3.03 본 계약에 따라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환매한 수출채권은 은행에 의한 명시적 또는 암시적인 진술 또는 보증 없이상환 청구권 없는 방식으로 한다.

3.04 고객이 매입일 이후 수출채권의 결제를 위한 현금, 수표, 어음, 지급 명령 등의 기타 지급수단을 수령한 경우, 고객은 이와 같은 현금, 수표, 어음, 지급명령 등을 은행의 대리인으로서 보관하였다가, 수령한 그대로의 형태와 통화로 은행을 수취인으로 배서하여 은행에 지급 또는 교부 한다.

3.05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해당 기일까지 정산하지 않은 경우, 은행은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 및 손실에 대해 은행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4조 고객의 진술 및 서약

외환 017-03 (2024-07-31)

- 4.01 수출채권의 금액, 결제 기간 등 매입 요청서에 기재된 정보는 모든 면에서 사실이며 정확한 정보이다. 고객은 채무자가 수출채권 결제를 위해 고객에 요청하는 서류제공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고객은 채무자가 매입 요청서에 명시된 매입일자에 매입 요청서에 명시된 수출채권 금액을 은행에 지급할 것과 이어한 지급 의무는 합법적이고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며 집행 가능함을 보증한다.
- 4.02 수출채권은 판매약정 하에서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계약, 본 계약에 따라 전달되는 통지증명서류 품의 집행이나 고객이 본 계약 및 상기 서류의 조건을 이행·준수함으로 인해 저촉되는 법, 규정, 명령, 정관 조항, 생산판매약정 또는 어떠한 기존 계약이나 합의도 존재하지 않는다.
- 4.03 고객은 수출채권, 본 계약의 집행 및 의무 이행, 본 계약에 따른 수출채권 양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모든 청부 기관 또는 유관 기관의 동의, 승인, 인가 및 허가를 받았으며, 동 기관에 신고 및 등록을 완료 하였다.
- 4.04 수출채권 양도를 위한 대항요건으로, 고객은 양도된 채권과 관련한 채무자와 제3자에 대한 은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법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대항요건 충족에 있어 고객은 은행과 전적으로 협력한다.
- 4.05 고객은 수출채권을 양도한 은행 외의 다른 어떤 이에게 이중으로 양도 또는 이전하거나 하려해서는 안되며, 생산판매약정 또는 수출채권의 상환조건의 중요 부분에 대한 수정에 동의하거나 계약상 채무자의 상환의무 면제에 동의하는 등 수출채권에 대한 은행의 이해관계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은행이 판단하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
- 4.06 (a) 본 계약의 5(e) 조항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고객이 은행을 대신하여 상기 조항에 명시된 선적 서류를 해당 채무자에게 송부하도록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고객은 은행을 대신하여 해당 선적 서류를 채무자에게 전달한다. 이러한 경우 고객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고객에 의한 선적서류 전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또한 고객은 송부 즉시, 선적서류의 인증등본을 은행에 제공해야 하며, 은행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서류를 채무자에게 전달했음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b) 제 4조 6(a) 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적 서류가 전자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 고객은 은행에 선적서류 인증등본과 채무자에 해당 서류를 전달 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면제”) 단, 고객은 이러한 면제의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면제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모든 손실, 손해, 비용(수수료 및 법류 자문에 쓰인 현금지불 경비를 포함), 손해배상 및 소송등에 대해 은행에 보상해 줄 책임이 있다. 또한,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매입 요청서를 은행에 제출할 때마다, 고객은 해당 매입일 이전 채무자에 선적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고객은 제 4조 6(a) 항에서 요구하고 있는 서류 및 증빙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도록 한다.
- 4.07 고객은 본 계약의 준비, 협상, 실행, 이행과 관련하여 은행이 지출한 법무 비용

외환 017-03 (2024-07-31)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에 대해 변제한다.

4.08 고객은 생산판매약정 또는 본 계약의 상환 조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수정 또는 계약상 채무자의 상환의무 면제에 대해 동의 등을 포함, 수출채권에 대한 은행의 이해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된다.

5조 선결 요건

제2조 3항에 명시된 은행의 결제에 대한 선결조건으로, 고객은 다음의 서류를 은행에 제출한다.

- (a) 정관 인증 등본, 법인등기부등본, 가장 최근의 재무 감사 보고서, 단, 이와 같은 서류를 은행에 이미 제출한 경우 제외
- (b) 대표이사의 인감 증명서, 대표이사가 본 계약, 매입 요청서 및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기타 모든 서류에 대한 이행권 위임을 위해 발행한 대리인 위임장, 이러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서명 견본, 단, 이와 같은 서류를 은행에 이미 제출한 경우를 제외
- (c) 수출 허가증 인증등본, 필요한 경우, 생산판매약정 및 수출채권과 관련된 정부 허가 서류 인증등본
- (d) 제 2초 1항에 명시된 해당 매입 요청서
- (e) (제 4조 6항에 따라) 해당 수출채권 관련 상업 송장, 선하증권, 관세 당국에서 발행한 수출 허가서를 포함한 선적 서류의 원본
- (f) 양도 통지서 인증등본
- (g) 은행이 합리적인 선에서 요청하는 기타 보충 서류

6조 계약의 해지

6.0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은 고객에 서면에 의한 해지 통보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 은행 또는 고객에 의한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이 명백히 불법인 경우
- (2) 고객이 본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그리고 이러한 불이행 또는 위반이 구제 불가능하거나 또는 구제가 가능하더라도, 은행의 통지 후 30일간 구제 불가능의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 (3) 고객이 채권자 회의를 소집하거나 채권자와의 조정 또는 타협, 채권자를 위한 양도를 하거나 제의하는 경우, 해당 관할 법원으로부터 청산 또는 관리 명령을 받거나, 이에 대한 결의안이 통과된 경우,(각각의 경우 조직 개편 또는 구조조정 과정에 있는 경우는 제외), 또는 고객 자산에 대한 관리인, 관리 수탁자, 또는 기타 유사 직무를 담당하는 관리인이 임명된 경우
- (4) 본 계약상의 고객의 진술 또는 서약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

외환 017-03 (2024-07-31)

6.02 계약 당사자는 본 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일방이 30일 전 상대방에 서면 해지 통보를 하는 경우에 한해 본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 할 수 있다.

6.03 제 6조에 따라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은행은 수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

7조 수익보장

7.01 (a) 고객이 본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모든 결제금은 현재 또는 미래의 세금, 부과금, 관세, 공제, 수수료, 원천징수, 또는 이와 관련한 모든 채무 금액등이 차감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단, 수출채권을 매입한 은행의 관할 세무당국이 부과한 은행의 당기 순이익에 대한 세금은 제외된다.(제외 대상이 되지 않는 모든 세금을 이하 “세금”이라 한다.)만일 고객이 법에 따라 본 계약에 의한 결제 금액으로부터 공제를 해야 하는 경우,(i) 공제되는 금액에 따라 결제 총액이 인상 조정되어 은행은 공제 후 공제가 없는 경우의 수령액과 동일한 금액을 받게 되며 (ii) 고객은 공제 금액 전부를 해당 세무당국 또는 법에서 정하는 담당 기관에 납부 한다.

(b) 고객은 은행이 납부한 세금 또는 이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벌금, 이자, 비용 포함)에 대해, 은행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은행에 지급하기로 한다. 또한 고객은 수출채권 채무자의 결제 금액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도 은행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에 보상 하기로 한다.

7.02 고객은, 은행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이 본 계약을 인정하고 본 계약에 따라 수출채권을 매입함으로 말미암아 직간접적으로 입은 손실, 비용 (은행의 법률 자문 비용으로 지불된 현금지불 경비 포함), 손해 배상 및 소송, 예를 들어, 고객이 은행을 대신하여 원본 선적 서류를 채무자에게 송부하도록 승인한 경우, 고객이 수출채권 매입과 관련하여 은행이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출채권의 만기일이 아닌 날짜에 고객이 수출채권을 환매하거나 채무자가 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경우 은행에 보상할 책임이 있다.

7.03 본 계약의 목적 상, 은행의 비용 및 손실은 실제 자금조달 비용 (관련 비용 포함) 보다 낮은 율로 자금을 재조달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등을 포함한다.

7.04 은행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고객이 입은 모든 손실이나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 은행은 본 계약과 관련한 은행의 행위 또는 실수로 발생한 직접적 손실 또는 손해 뿐만 아니라 특별, 간접적, 결과적인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의 책임을 진다.

8조 법규준수와 제재

8.01 고객은 다음 사항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 (1) 은행은 관할권의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제재 또는 국내외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법규준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기타 은행의 그룹 계열사에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법규준수 조치에는 다음 명시된 내용이 포함 될 수 있다.

(a) 다음 명시된 내용을 거절

(i) 무역 서비스 발행, 갱신, 연장, 이전 및 양도

(ii) 청구권 지급 또는

(iii) 제재 또는 국내외 법규에 어긋나는 무역 서비스 및 지시서 처리

9조 기타

9.01 본 계약의 조건은 서두에 기재된 날짜로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환매금액, 이자 그리고 본 계약에 따라 고객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기타 총액이 전액 지급되었을 때 종료 된다.

9.02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의 지배를 받으며 이에 준거하여 해석된다.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법적 소송은 고객 또는 은행의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다루게 된다.

9.03 본 계약은 고객과 은행 그리고 이들의 후임자 및 양수인에 구속력을 가지며 이들에 의해 이행되어야 한다. 단, 고객은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사항을 양도 또는 이전할 권한이 없다.

9.04 본 계약상 이루어지는 모든 통신, 명령 또는 통지사항은 자필의 서면 통지일 경우 또는 아래와 같이 텔레스나 팩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정당한 것으로 간주 된다.

고객

대한민국

전화번호: _____ 팩스: _____

은행: HSBC 은행 서울 지점
서울시 중구 칠판로 37
HSBC 빌딩

전화: 822-2004-0302.
팩스: 822-2004-0187

외환 017-03 (2024-07-31)

견본 양식 A

매수요청서

일자: 년 월 일

수신: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당사와 귀행간에 20 년 월 일자로 체결된 수출 채권양도 기본계약(“이 계약”) 관련입니다. 이 계약에 정의된 조건은 이하에 사용된 각각의 의미를 가집니다.

당사는 이 계약 제2.01조에 따라 년 월 일(“매입일”)자로 첨부된 부록에 기재된 매출채권을 이 계약에 따라 정한 할인금액으로 매수할 것을 요청하는 바랍니다.

모든 지급은 매입대금지급일에 __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당사의 계좌(계좌 번호:)로 이루어집니다. 당사는 이에 (i) 상기 매입일 기재일자가 상기 언급된 매출채권의 매입일이며 (ii) 이 계약에서 당사가 행한 진술 및 확약사항이 이 요청서 일자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요청서 일자 현재 진정하고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양도인:

외환 017-03 (2024-07-31)

양도대상매출채권 목록

1. 매매계약명:

매매계약일자:

매매일:

매매상품:

송장번호:

채권원금:

양도금액:

채권만기일:

2. 매매계약명:

매매계약일자:

매매일:

매매상품:

송장번호:

채권원금:

양도금액:

채권만기일:

3. 매매계약명:

매매계약일자:

매매일:

매매상품:

송장번호:

채권원금:

양도금액:

채권만기일:

견본양식 B

양도통지서

일자: 년 월 일

수신: 채무자

제목: 매매계약명/매매계약 일자

귀사의 대금지급에 대하여 당사가 구매계약에 기재된 물품을 판매할 의무가 있는 상기 구매계약(“구매계약”) 관련입니다. 구매계약에 따라, 당사는 귀사에게 일부 물품을 판매하였으며 첨부 부록에 기재된 매출채권(“매출채권”)을 취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에 귀사에게 (i) 양도인인 당사(“양도인”)와 양수인인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양수인”)간의 20 년 월 일자 수출채권양도 기본계약(“이 계약”) 및 (ii) 이 계약에 따른 년 월 일자 매수요청서에 따라, 양수인에 매출채권을 매각, 양도하였음을 통지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당사는 귀사가 매출채권의 해당 만기일에 대한민국 서울에 소재한 외환은행 및 신한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양수인 계좌(USD-외환은행(계좌번호:963-THR-213018), KRW-신한은행(계좌번호:250-04-001070)를 통하여 양수인에 매출채권을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상기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동봉된 서신 부분에 서명하시어 당사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인:

외환 017-03 (2024-07-31)

양도대상매출채권 목록

1. 매매계약명:

매매계약일자:

매매일:

매매상품:

송장번호:

채권원금:

양도금액:

채권만기일:

2. 매매계약명:

매매계약일자:

매매일:

매매상품:

송장번호:

채권원금:

양도금액:

채권만기일:

3. 매매계약명:

매매계약일자:

매매일:

매매상품:

송장번호:

채권원금:

양도금액:

채권만기일: